의 안 번 호

1752

#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#### 1. 검토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5. 31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5. 31.(월)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6. 9.(화)

#### 2. 제안이유

○ 한글도시 추진 및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, 찾아가는 보건복지팀 설치 및 신규 행정수요 적극대응 등 행정환경에 부응하는 조직운영을 통해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 내용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.

#### 3. 주요내용

- 가. 분장사무 조정
  - 1) 주민자치국(안 제7조)
    - 가) 문화예술, 문화관광, 문화재 관리, 한글도시 등에 관한 사항
    - 나) 혁신교육, 평생교육, 도서정책,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

#### 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제112조
- 나.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제13조

#### 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업무의 전문성 강화, 보건복지팀 설치 및 한글도시 추진, 신규 행정 수요를 고려한 행정기구의 개편으로 원활한 구정업무 추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.

# 근 거 법 규

### 지방자치법

- 제112조(행정기구와 공무원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.
  -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
- 제13조 (시·군·구의 기구설치기준) ① 시·군·구 본청의 실·국이나 과·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·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, 시·군·구 본청에 두는 실·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.
  - ② 시·군·구 본청의 실장·국장과 과장·담당관의 직급과 실·과·담 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 다.
  - ③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(이하 "시·도지사"라 한다)는 관할 시· 군·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지 침을 작성하여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.
  - ④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실·국과 실·과·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·도와 시·군·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.